

1차시

# 핵심만 쏙쏙! 기업법무실무

## 회사법 : 주식회사

변호사 / 공인회계사 이은종

# Contents

**1**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**2** 주식의 종류

**3** 주식회사의 기관

# Contents

## 1 **주식회사의 기본 개념**

1.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

2. 주식회사의 설립

3. 주식의 양도

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1.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

### ■ 회사 제도의 유용성



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1.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

### 법인의 특징

#### 법인(法人)

-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가상의 개념으로, 사람들의 모임 또는 독립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인간으로 취급
-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( = 재산권 인정, 소송의 주체가 됨, 형사처벌도 가능)
- 민법상 사단법인, 재단법인이 있으며, 상법상 주식회사도 법인에 속함
- 법인의 대표, 업무집행기관(이사), 총회(주주총회) 등 기관이 필요함

→ 청산

### 법인의 특징

#### 사업자등록의 의미

-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의 주체
-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
-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짐

→ 폐업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1.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

###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

등기번호	000905	
등록번호	130111-0006246	
상 호	삼성전자 주식회사	변경 2012.06.29 도로 명주소 2012.06.29 등기
본 점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(에안동)	변경 2012.06.29 등기
공고방법	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게재한다	변경 2018.05.03 등기
1주의 금액	금 100 원	2018.05.03 변경 2018.05.03 등기
발행할 주식의 총수	25,000,000,000 주	2018.05.03 변경 2018.05.03 등기
발행주식의 총수액	자본금의 액	변경 연월일
발행주식의 총수액	자본금의 액	등기 연월일
보통주식	7,322,963,700 주	2018.05.03 변경
우선주식	6,419,324,700 주	2018.05.03 등기
	903,699,900 주	2018.05.03 등기
금 897,513,820,000 원		
1. 전자전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, 판매, 수급대행 및 임대, 서비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2.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, 판매, 수급대행 및 임대, 서비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3. 의류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4. 반도체 및 광원용기기계기구와 그 부품의 제작, 판매, 서비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5. 창설유, 케이블 및 관련기구의 제조, 판매, 임대, 서비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6. 전자제안조각 및 동 관련제품의 제조, 판매, 수급대행 및 임대, 서비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7. 조각물, 컴퓨터 프로그램등의 제작, 판매, 임대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8. 녹음하중, 기술의 판매, 임대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9. 정보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과 역부의 제공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0. 자동차어기기 및 용용설비의 제작, 판매, 임대, 서비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1. 공작기계 및 그 부품의 제작, 판매, 임대, 서비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2.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제조,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
등기번호	000905	
13. 반도체 제조 장치의 제조,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4.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부재료의 제조,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5. 기타 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6. 합성수지의 제조, 가공 및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7. 금속 제외한 금속의 제련가공 및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8. 수출입업 및 통신행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19. 경제성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20. 부동산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21. 불동재산 취득기 등 부동산 전매 및 계약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22. 계약기 취득기 등 부동산 전매 및 계약 판매업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23. 권 과학의 기술용역, 정보통신 등사업 및 전기공사업	<1998.03.27 변경 1998.04.09 등기>	
24. 주택사업 임대 및 분양	<1997.02.28 변경 1997.03.08 등기>	
25. 운송, 전기 및 기타 관련사업	<1998.03.27 변경 1998.04.09 등기>	
26.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	<1998.03.27 변경 1998.04.09 등기>	
27. 전기공급 및 계약장치 제조업	<1998.03.27 변경 1998.04.09 등기>	
28. 교육 서비스업 및 사립관련 서비스업	<1998.03.27 변경 1998.04.09 등기>	
29. 광에 관련된 부동산업 및 부가	<1998.03.27 변경 1998.04.09 등기>	
합의에 관한 사항		
사외이사 이인호 431102-*****	2010년 03월 19일 취임	2010년 03월 26일 등기
	2015년 03월 19일 중임	2015년 03월 25일 등기
	2016년 03월 19일 중임	2016년 03월 21일 등기
감사위원 이인호 431102-*****	2010년 03월 19일 취임	2010년 03월 26일 등기
	2013년 03월 19일 중임	2013년 03월 25일 등기
	2016년 03월 19일 중임	2016년 03월 21일 등기
사외이사 송광수 600104-*****	2013년 03월 15일 취임	2013년 03월 25일 등기
	2016년 03월 15일 중임	2016년 03월 21일 등기
감사위원 송광수 600104-*****	2013년 03월 15일 취임	2013년 03월 25일 등기
	2016년 03월 15일 중임	2016년 03월 21일 등기
사외이사 박재원 550121-*****	2016년 03월 15일 취임	2016년 03월 21일 등기
	2016년 03월 11일 취임	2016년 03월 21일 등기
	2016년 05월 13일 신임취임 위임일자결정	
사내이사 이재용 680623-*****	2016년 10월 27일 취임	2016년 11월 04일 등기
사내이사 김기남 680414-*****	2018년 03월 23일 취임	2018년 04월 02일 등기
대표이사 김기남 680414-*****	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60, 109동 1206호(래퍼빌, 한보이노텍)	

등기번호	000905	
섬)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사내이사 김현석 610123-*****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대표이사 김현석 610123-*****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132번길 15-8(판교동)	
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사내이사 고동진 610326-*****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대표이사 고동진 610326-*****	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, 129동 501호(한남동, 한남더힐)	
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사내이사 이상훈 650616-*****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사외이사 권진욱 621221-*****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감사위원 권진욱 621221-*****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사외이사 박병국 590419-*****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사외이사 미함중독인 김홍승 1960년 8월 13년생	2018년 03월 23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	
기 타 사 항		
1. 1988년 11월 3일 구미시 풍산동 269 三星半導體通何 株式會社를 흡수합병.		
2. 우선주식의 내용		
(1) 우선주식은 비우선주식에 비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함.		
(2)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%를 금전으로 더 배당함.		
(3)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.		
(4) 유상증자,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,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, 이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당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짐		
3. 명의개서대리인		
한국에특별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로 40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		
2014년 11월 26일 변경 2014년 12월 15일 등기		
4. 주식의 소각		
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(다만, 당해 사업년도만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격의 한 이의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한도범위를 결정하는 규정이언어이다 한다) 내에서		

\*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(변경, 경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\* 등기사항증명서는 필러로 출력 가능합니다. 열람일시 : 2018년08월29일 12시16분32초

\*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(변경, 경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\* 등기사항증명서는 필러로 출력 가능합니다. 열람일시 : 2018년08월29일 12시16분32초

\*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(변경, 경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\* 등기사항증명서는 필러로 출력 가능합니다. 열람일시 : 2018년08월29일 12시16분32초

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1.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

###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

등기번호	000905
<p>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</p> <p>2002년 02월 28일 변경 2002년 03월 14일 등기</p> <p>1. 흡수합병 수원시 영동구 대단동 416번지 삼성디지털미팅 주식회사를 합병 2010년 04월 02일 신청하고 2010년 04월 30일 등기</p> <p>1. 흡수합병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1 삼성광주전자 주식회사를 합병 2011년 01월 04일 등기</p> <p>1. 회사분할 2012년 4월 3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재산인부를 분할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 (농서동)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를 설립 2012년 04월 03일 등기</p> <p>1. 흡수합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(농서동) 삼성엘이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2012년 04월 03일 등기</p> <p>1. 흡수합병 경상북도 구미시 입수동 04-1 에스이에이치에프코리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2012년 12월 04일 변경 2012년 12월 04일 등기</p> <p>1. 회사분할 인부를 분할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0(대안동, 삼성전자) 에스프린팅솔루션 주식회사를 설립 2016년 11월 04일 등기</p>	
관 렾 사 재	
<p>제141의 두보중 해의 전환사채 2002년 3월 30일 전부 주식전환 &lt; 2002년 04월 12일 등기 &gt;</p>	
관 렾 사 재	
<p>제166의 두보중 해의 전환사채 2002년 7월 31일 전부 주식전환 &lt; 2002년 08월 02일 등기 &gt;</p>	
관 렾 사 재	
<p>제167의 두보중 해의 전환사채 2003년 7월 4일 전부상환 &lt; 2003년 07월 15일 등기 &gt;</p>	
주 식 대 수 선 택 권	
<p>1. 일정한 경우 주식대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</p> <p>1. 본 회사는 임, 피임(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, 피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대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.</p>	

등기번호	000905
<p>다만,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, 피임(이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)에게 이사회결의로서 주식대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&lt; 2016년 03월 11일 변경 2016년 03월 25일 등기 &gt;</p> <p>2. 주식대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, 경영, 해의결정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임, 피임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대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임, 피임은 제외한다.</p> <p>&lt; 2002년 02월 28일 변경 2002년 03월 12일 등기 &gt;</p> <p>3. 주식대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대수선택권의 행사결과와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.</p> <p>&lt; 2002년 02월 28일 변경 2002년 03월 12일 등기 &gt;</p> <p>4. 주식대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.</p> <p>&lt; 2002년 02월 28일 변경 2002년 03월 12일 등기 &gt;</p> <p>5. 주식대수선택권은 이회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서 과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단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단, 이 경우 주식대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&lt; 2002년 02월 28일 변경 2002년 03월 12일 등기 &gt;</p> <p>6. 주식대수선택권의 내용, 행사방법 등 주식대수선택권의 조치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,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&lt; 2002년 02월 28일 변경 2002년 03월 12일 등기 &gt;</p> <p>7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대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가. 임, 피임이 주식대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회피한 경우 나. 임, 피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다. 기타 주식대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&lt; 2002년 02월 28일 변경 2002년 03월 12일 등기 &gt;</p>	
회사설립연월일	
1989년 01월 13일	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	
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기로부터 이기 2001년 08월 21일 등기	
주수로 700원 영수함 --- 이하 역역 ---	
관할등기소 :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/ 발행등기소 :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센터소	

등기번호	000905
------	--------

열람용

\*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(변경, 정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\* 등기사항증명서는 필러로 출력 가능하며, 열람일시 : 2018년08월29일 12시16분32초 - 4 / 6 -

\*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(변경, 정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\* 등기사항증명서는 필러로 출력 가능하며, 열람일시 : 2018년08월29일 12시16분32초 - 5 / 6 -

\*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필적인 표현이 없습니다.  
\*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(변경, 정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\* 등기사항증명서는 필러로 출력 가능하며, 열람일시 : 2018년08월29일 12시16분32초 - 6 / 6 -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1.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

### ■ 사원의 책임

#### 직접책임

- 사원이 직접 회사 채권자에게 회사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

#### 간접책임

-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만 지고 회사채무의 변제책임은 회사만 지는 것

#### 유한책임

- 출자액을 한도로 부담하는 책임

#### 무한책임

- 출자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책임

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1.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

### 회사의 종류

합병회사	합자회사	유한책임회사	주식회사	유한회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한책임사원 /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사원이 간접 / 유한 책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사원(주주)이 간접 / 유한 책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사원이 간접 / 유한 책임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원이 직접 업무집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짐</li> <li>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권을 가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음 / 별도의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주자격과 별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집행을 결정,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와 업무집행을 담당</li> <li>상설감시기구인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분화되지 않음, 감사는 임의기관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 양도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한책임사원 지분양도는 총사원의 동의로</li> <li>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분양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주는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원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가능</li> </ul>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1.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

### 주주의 유한 책임

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음

#### 주주의 유한 책임

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납입할 책임을 질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

##### 적극적인 투자 가능

- 주주의 개인재산이 사업상의 위험으로부터 격리
-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의 투자 가능

##### 주식의 거래 가능

-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이 사업상의 위험에 한정됨
- 주식이 내용적으로 균일

##### 자금조달의 용이성

- 실패 위험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도 자금조달 가능

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2. 주식회사의 설립

### 주식회사 설립 절차

#### 사전 준비 단계

- 발기인의 구성
- 상호 및 목적사항 결정
- 정관 작성
- 주식발행사항 결정

#### 설립 단계

##### 발기 설립의 경우

- 발기인의 주식인수
- 주금납입
- 임원선임
- 설립경과조사

##### 모집 설립의 경우

- 발기인의 주식인수
- 주주모집 / 모집주주 청약
- 발기인 주식 배정
- 주금납입
- 창립총회 / 임원선임
- 설립경과조사

#### 마무리 단계

- 등록 면허세 등 납부
- 설립등기
- 사업자 등록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2. 주식회사의 설립

### 발기인의 개념 및 책임

#### 발기인이란?

-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
-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
- 별다른 자격조건의 제한이 없으며, 법인이나 미성년자(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)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음
- 발기인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 가능

#### 1. 회사가 성립한 경우

- 자본충실책임
-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(상법 제322조 제1항 및 제324조)
-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(상법 제322조 제2항)

#### 2.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

-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(상법 제326조 제1항)
- 회사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

#### 발기인의 특별배임죄

- 발기인의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(상법 제622조 제1항)

#### 조사업무 방해

- 발기인이 이사, 감사, 검사인, 감정인 또는 공증인의 회사설립사항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(상법 제635조 제1항 제3호)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2. 주식회사의 설립

###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

	발기설립	모집설립
기능	• 소규모 회사 설립에 용이	•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
주식의 인수	•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	•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인수
인수 방식	• 단순한 서면주의	•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
주식의 납입	•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	•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
납입의 해태	•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	• 실권절차(상법 제307조)가 있음
창립총회	• 불필요	• 필요
기관구성	•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	•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이고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
설립경과조사	•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	•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
변태설립사항	•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청구,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	•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,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

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2. 주식회사의 설립

### ■ 변태설립사항

#### 변태설립사항이란?

발기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

- 1)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
- 2)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의 수
- 3)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할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

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

#### 현물출자

-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, 그 가치가 과대 평가될 경우 자본충실을 저해하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
-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가능(동산, 부동산, 채권, 영업상 비밀 등)
- 노무 / 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음
- 과대평가 : 경미하다면 현물출자 자체는 유효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
중대하다면 현물출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, 회사설립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2. 주식회사의 설립

### 정관

#### 정관이란?

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

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(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)

#### 절대적 기재사항

- 1) 목적
- 2) 상호
- 3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
- 4)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 금액
- 5)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
- 6) 본점의 소재지
- 7)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
- 8) 발기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
#### 상대적 기재사항

- 1) 변태설립사항
- 2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3) 종류주식 발행
- 4) 전환주식의 발행
- 5) 서면투표의 채택
- 6)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
- 7)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
- 8)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등

#### 임의적 기재사항

- 주식회사의 본질, 법의 강행규정,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(예: 이사·감사의 수, 총회의 소집시기, 영업연도, 지점의 설치·이전·폐지 등)등은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 발생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2. 주식회사의 설립

### ■ 회사의 설립 목적

#### 설립목적

- 회사의 존재 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

#### 중요성

-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
  - 1)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
  - 2)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
  - 3)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(留止請求權)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

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2. 주식회사의 설립

###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

#### 해산 절차

해산사유 :

- 1)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
- 2) 합병 및 분할 등
- 3)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
- 4) 주주총회의 결의

#### 청산 절차

-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
-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수행
-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청산 종결함

- 회사에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함
- **휴면회사의 해산** : 최후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법원 관보에 공고 후 2월 이내의 신고기간 만료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봄, 그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한 것으로 봄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3. 주식의 양도

### 주식의 양도 방법

#### 원칙

- 주권 발행 후 주권을 양도
-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함(상법 제336조 제1항)
- 주권의 점유자는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(상법 제336조 제2항)

#### 주권 미발행시

-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음
-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음
- 주식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여야 함

### 조세 이슈

#### 증권거래세

- 양도금액의 1000분의 5
- 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보았는지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과

#### 양도소득세

- 주식의 양도차익(=양도가액 - 취득원가)에 세율(20% 내외)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
-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을 처분가액으로 하여도 무방함(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외)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3. 주식의 양도

### 타인명의의 주식인수

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관하여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

대법원 2008. 3. 27. 2007다70599 등 판결

“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.”

다만 명의차용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해야 함



# 1.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

## 3. 주식의 양도

### 주식 양도 계약서(예시)

#### 주식양수도계약서

양도인 AAA과 양수인 BBB은 아래와 같이 양도인이 소유한 XXX주식회사의 보통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.

아 래

1. 법인명 : XXX 주식회사(111111-1111111)  
서울 강남구
2. 주식의 종류 : 보통주식
3. 1주당 액면금액 : 5,000원
4. 양도할 주식 수 : xxx주(총발행주식의 xx%)
5. 양도금액 : xxx원(금 xxx원 정)
6. 매매대금지급일 : 2018. 8. xx.
7. 양수도기준일 : 2018. 8. xx.

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인은 XXX주식회사의 보통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.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양도인, 양수인 및 XXX주식회사가 각 1부씩 보관하며, XXX주식회사는 위 주식 양수도 거래를 승낙한다.

※ 첨부서류 :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

양도인	양수인	주식양수도 승낙
AAA(000000-1111111) 주소	BBB(222222-1111111) 주소	XXX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CCC

# Contents

## 2 주식의 종류

# 2. 주식의 종류

## 개관

주식은 액면주식 – 무액면주식, 상법상 정한 종류주식 등 다양한 분류로 나눌 수 있음

### 주식

액면주식 외에도 무액면 주식도 발행이 가능함

이익배당 및  
잔여재산 분배에  
관한 종류주식

의결권의  
배제·제한에 관한  
종류주식

주식의  
상환에 관한  
종류주식

주식의  
전환에 관한  
종류주식



# 2. 주식의 종류

##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

### 액면주식

-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된 주식
- 과거에는 액면주식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
-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1주의 금액(권면액)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, 그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의 균일액이어야 함
- 권면액은 자본금을 결정하는 기능을 함
- 권면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권면액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

### 무액면주식

- 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
- 자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권면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이나 신주발행시의 이사회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
- 발행가액의 50% 이상은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
- 정관의 정함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, 다만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

# 2. 주식의 종류

## 종류주식

### 상법 제344조(종류주식)

- 1) 회사는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(이하 "종류주식"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
- 2)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.
- 3)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, 주식의 병합·분할·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·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.
- 4)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.

### 특수한 정함의 허용

- 이질적인 주주집단이 존재
-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신주인수, 주식 병합 등의 경우에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배정을 특수하게 정하는 것을 허용

### 특수한 정함의 시점과 주제

- 종류주식 발행시점에 미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것이 아님
- 신주발행의 경우 이사회, 자본감소나 합병결의의 경우 주주총회

### 종류주주총회

- 특수한 정함으로 인하여 특정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손해를 입을 종류의 주주끼리의 주주총회가 필요함

## 2. 주식의 종류

###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

#### 상법 제344조의2(이익배당,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)

- 1)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,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,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.
- 2)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,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,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.



우선주

보통주

# 2. 주식의 종류

##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(계속)

### 우선주

- 배당의 순위에서 앞서는 주식
- 우선배당금 : 보통주에 앞서서 배당할 금액
- 우선주의 발행시 우선배당금이 확정되어야 하며 국내에서는 우선배당률의 형태로 확정되는 것이 보통
- ‘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’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
- 예전에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우선배당 여부와 의결권은 별개

누적적  
우선주

참가적  
우선주



# 2. 주식의 종류

##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(계속)

### 누적적 우선주

- 특정연도의 배당금이 우선배당금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금액을 다음 연도의 배당에 누적하여 수취
- 발행 후 일정기간만 누적적 우선주로 하거나 과거 3년분만 누적한다는 식으로 누적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
-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오래된 누적분부터 지급하고 누적분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당해 연도 우선배당금 지급

### 참가적 우선주

#### 단순 참가

- 우선주에 먼저 우선배당금을 배당하고 잔여이익으로 보통주에 우선주와 같은 금액의 배당을 함
- 잔여이익이 있으면 우선주와 보통주가 같은 비율로 배당에 참가함

#### 즉시 참가

- 우선주에 먼저 우선배당금을 배당하고 잔여이익이 있으면 우선주와 보통주가 같은 비율로 배당에 참가하는 방식
- 배당가능이익이 어느 정도 이상인 한 우선주는 항상 보통주보다 우선배당금만큼 더 많은 배당을 받음

# 2. 주식의 종류

##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

### 상법 제344조의3(의결권의 배제·제한에 관한 종류주식)

-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,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의결권 없는 주식

-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주식
- 우선주가 아닌 주식에 대해서도 허용

### 의결권 제한 주식

- 주주총회의 일정한 결의사항에 관하여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
- 예 :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, 최초의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의결권이 소멸하는 주식

# 2. 주식의 종류

##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

### 상법 제345조(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)

- 1)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, 상환기간,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.
- 2)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
- 3)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, 상환가액, 상환청구기간,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- 4)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(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)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)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(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)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.

# 2. 주식의 종류

##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(계속)

### 상환의 방법

#### 임의상환

- 회사가 주주와의 사이에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취득하여 실효시키는 것, 자기주식취득에 이은 주식소각과 다를 바가 없어 임의상환만을 허용하는 회사상환주식은 상환주식으로 보기 어려움

#### 강제상환

- 회사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환주식을 소멸시키는 것, 상환주주 상호간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상환의 경우에는 상환을 받을 주식을 추천, 안분비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해야 함

### 상환의 효과

#### 자본금에 대한 영향

- 상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식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,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금과의 사이에 괴리가 생김

#### 변경등기

- 자본금 감소는 없으나 주식의 소멸로 발행주식 총수와 종류주식의 수에 변화가 생기므로 변경등기 해야함



## 2. 주식의 종류

###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

#### 상법 제346조(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)

- 1)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환의 조건, 전환의 청구기간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.
- 2)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, 전환의 조건, 전환의 기간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.
- 3)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
  - ① 전환할 주식
  - ②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
  - ③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
- 4)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(留保)하여야 한다.

# 2. 주식의 종류

##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(계속)

### 전환의 조건

- **전환가액**  
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 
ex) 보통주 1주의 발행가액 5천 원
- **전환율**  
대상주식과 전환발행주식의 비율  
ex) 우선주 1주에 대하여 보통주 1주

### 상법 제348조(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)

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.

### 전환의 효과

- **발행주식수의 증감 및 등기**  
대상주식의 수는 감소하고 신주식의 발행주식수는 증가함,  
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필요함
- **소멸된 대상주식의 부활**  
전환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소멸된 대상주식만큼 그 종류의 미발행주식이 부활함

## 2. 주식의 종류

### ■ 상환전환우선주(RCPS)

#### 정의

-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
- 상환권과 전환권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선주
- 투자회사의 사업 성공 시에는 상장 등과 연동하여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권을 가지고, 사업 실패 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상환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

#### 특징

##### 우선주에 상환권을 결합

사채와 같이 경영권에 대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보장

##### 우선주에 전환권을 결합

회사는 이익배당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금조달의 비용 절감 가능,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에 연동하는 수익과 의결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게 됨

#### 실무상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하는 경우 많음

- 특정 사유 발생 시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식 매수 의무 규정



1차시

# 핵심만 쏙쏙! 기업법무실무

## 회사법 : 주식회사

감사합니다